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0,309,422	12,609,283
일반회계		402,519,686	12,075,591
특별회계		17,789,736	533,692
기타특별회계		17,789,736	533,69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4,544	7,336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209,133	96,274
	주차장 특별회계	706,000	21,1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2,399,000	371,970
	수질개선 특별회계	60,312	1,80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47,000	28,410
	기반시설 특별회계	223,747	6,71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33,95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